

# 2025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2025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 위치정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CONTENTS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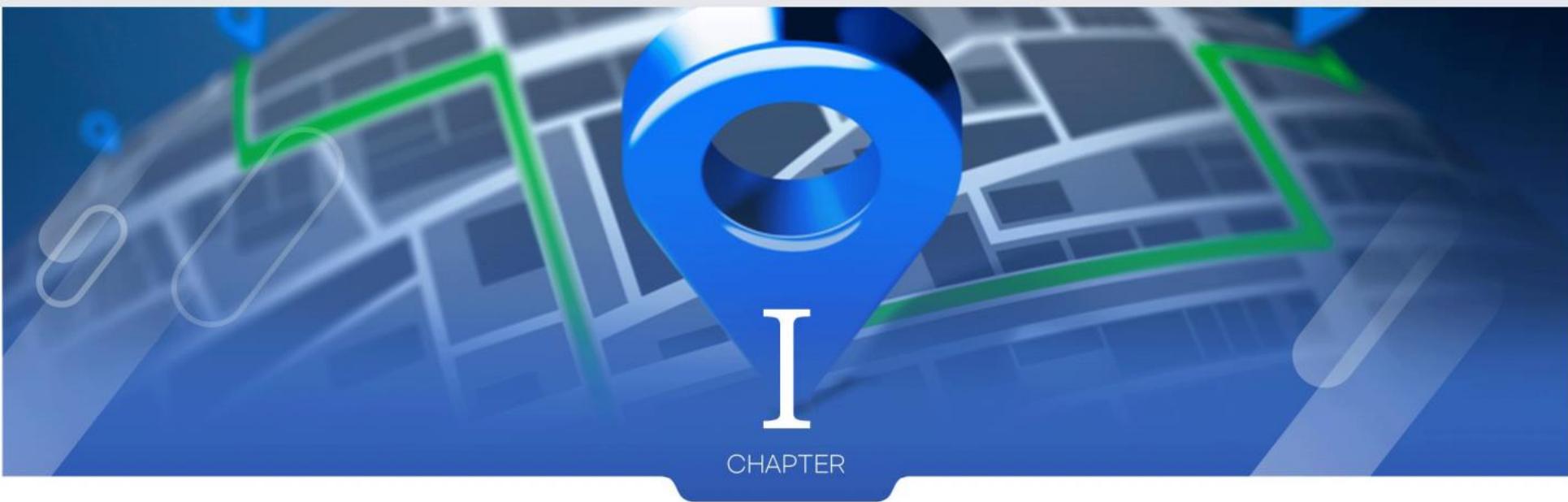
## I 위치정보 보호조치 규정

CHAPTER

## II 위치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

CHAPTER

## III 위치정보 사업자 등의 의무사항



# 위치정보 보호조치 규정

## 01 위치정보 보호조치 관련 규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 1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상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상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01 위치정보 보호조치 관련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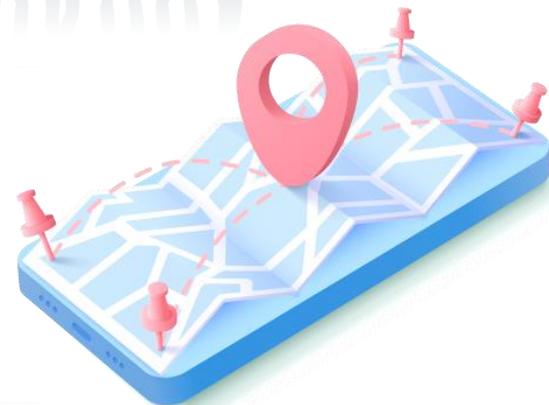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②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 ③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④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 ⑤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 ②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 ③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 ④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⑤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 02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제정(2022. 6. 9.)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2018.10.16)



### 동법 시행령 제20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 02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고시 내용 발췌 (일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2. 6. 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1호, 2022. 6. 9.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정책과), 02-2110-1507

**제1호(목적)**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사업규모, 위치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호(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란 위치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위치정보취급자"란 위치정보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삭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란 법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 수집·제공·삭제 및 같은 조 제5호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삭제 업무를 말한다.  
4. "작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워드·맷쇼·변경·워즈하거나 그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개인"이란 「개인 및 인권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을 말한다.  
6. "보호조치"라 함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위치정보시스템 또는 개인단말기 등과 쉽게 분리·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호(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직함)**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삭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위치정보사업자 등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위치정보 침해행위를 위한 법령  
3. 위치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임원 또는 위치정보주체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하여야 한다.

**제4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 등 각 단계별 접근관리정책 수립 및 운영 계획)**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관리를 수집·이용·제공·삭제 등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민원예감인 부여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전보 또는 피직 등 인식이동이 발생하여 위치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관리를 변경 또는 탈퇴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원부여, 변경 또는 탈퇴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제5호(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등 규정된 취급·관리 정책 및 지침 마련)**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취급자를 미련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보호 조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침을 미련한 것으로 본다.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가 제1항의 지침(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침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말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호(위치정보 제공대상 기술적 접근제어의 운영·관리)** ① 취급대정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  
1.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대상 국민지표  
2. 제1호의 자료를 위치정보주체에 열람·교지한 사실에 관한 자료  
③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대상 국민지표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취급대정을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 취급대정에 위치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 취급대정용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호(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연 1회 이상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제1항의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치정보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위치정보취급자가 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호(접근관리 권한 위임·한정)**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시행·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위치정보취급자별로 발급하고, 다른 위치정보취급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취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말기 주소 식별과 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호(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위한 접근기록, 접근기록 삭제 및 복구)**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있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화벽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2. 위치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을 필요최소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기타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10호(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의 한자문 기록·보존 절차의 운영)**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을 자동으로 기록·보유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제1항의 접근기록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제1항의 접근기록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호(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 등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악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실행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인 경우가 발원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패치업데이트에서 보안 업데이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 02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개인정보는 각각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규율됨
-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에 근거한 이 권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위치정보 사업자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  
위치정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 II

CHAPTER

# 위치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

## 01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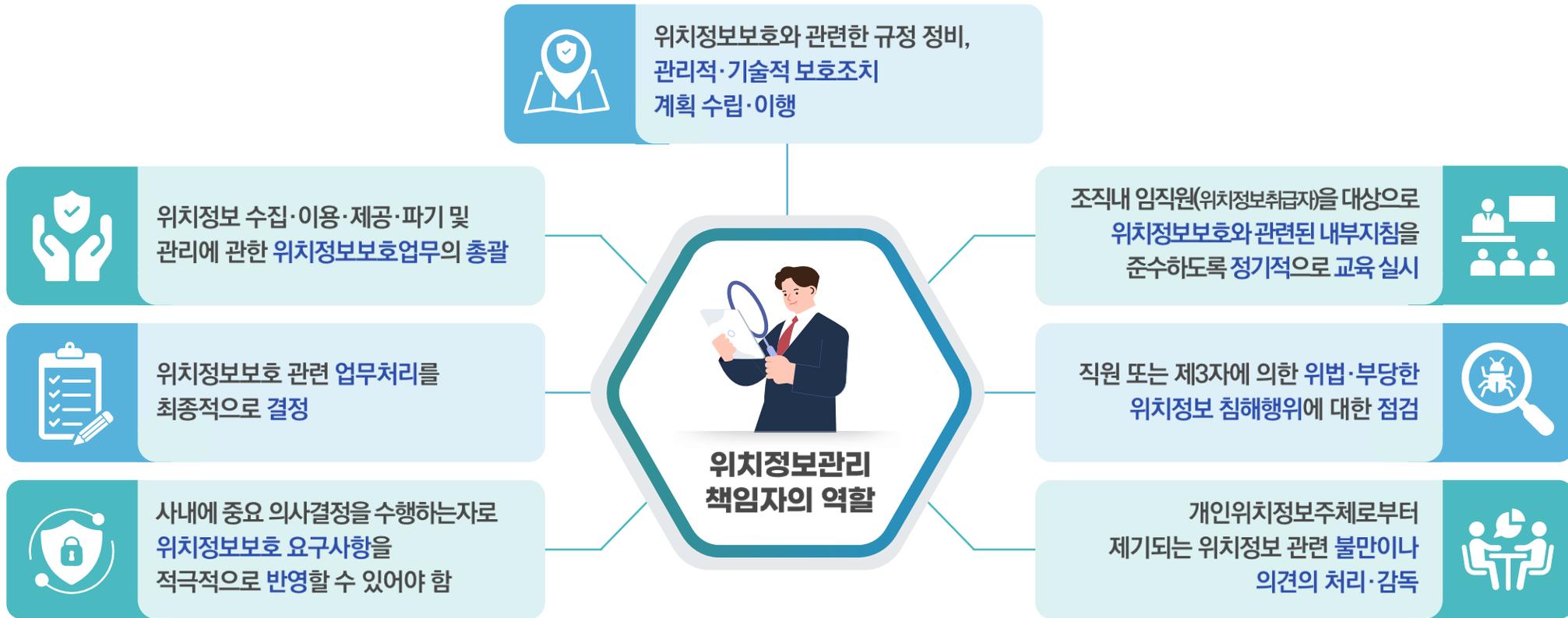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사업자 내에서 위치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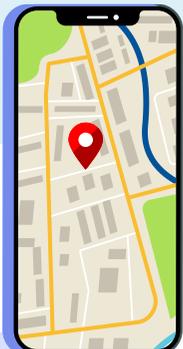
- 사내 임직원 중 최소 1인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 위치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보안 관련 지식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의 취급에 관한 법·제도적인 측면 등 다양한 지식이 요구 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임 가능

## 01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 02 위치정보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위치정보 취급자 정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제 구현·운영하는 자, 고객만족센터 상담원 등 업무상 위치정보의 열람·처리가 불가피한 자로서 정규직 외에 임시직·계약직원 등을 포함한다.



### 위치정보 취급자 지정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취급자를  
업무상 불가피한 자로 최소화

### 위치정보 취급자 역할

위치정보취급자는 업무 상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취급(수집, 보관,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하는 역할 수행

## 02 위치정보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위치정보 취급자 책임

- 1 위치정보의 누설 금지 등 보호 활동
- 2 위치정보관련 지침의 준수 및 이행
- 3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4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위치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 02 위치정보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의 목적

1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조직 내부의 위치정보 취급·관리 절차를 포함한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을 수립

\* 최고경영층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고,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취급자가 위치정보 처리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올바른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내부방침이나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

3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이를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02 위치정보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의 내용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위치정보관련 정책 수립·운영되는 사항을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맞게 명시하여야 함

##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포함 사항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정정 요구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에 관한 사항
- 위치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 보호조치 기준 제6조부터 제13조에 관한 세부사항
- 그 밖에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02 위치정보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참고)

대외비

(주) OOOO

##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

2015.11.

## [목 차]

1	목적.....	5.
2	위치정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5.
2.1	(위치정보의 정의).....	5.
2.2	(적용 범위).....	5.
3	위치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	6.
3.1	(위치정보보호 조직 구성도).....	6.
3.2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6.
3.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6.
3.4	(위치정보관련 실무 담당자 및 역할).....	7.
4	위치정보 취급 및 관리.....	7.
4.1	(위치정보 보존).....	7.
4.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력 열람).....	8.
5	교육.....	8.
5.1	(목적).....	8.
5.2	(교육대상).....	9.
5.3	(교육내용).....	9.
5.4	(교육 일정 및 시간).....	9.
5.5	(교육 방법).....	9.
6	내부 보안 감사.....	10.
7	기술적 위치정보보호.....	10.
8	통신비밀 보호업무.....	11.

## 03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 제한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개인별 권한 제한

- 외부인 뿐만 아니라 내부인에 의한 위치정보의 불법 사용, 유출, 위조·훼손 등을 모두 포함
- 위치정보보호 책임은 채용 부터 퇴직 시까지 지속적으로 위치정보의 유출이나 변조·훼손 위험 예방 필요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위치정보주체를 대상으로 불만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정보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 등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

-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접근권한자의 업무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계정은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할당

- \*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제 접근하는 자 또는 접근하는 시스템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
- \* 위치정보시스템의 불법 사용과 유출, 변조·훼손 등이 발생 했을때 그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 03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 제한

- 사업규모가 작아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에게 특정 권한을 복수로 할당 가능
  - \*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함
- 위치정보시스템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의 기록
  - \* 권한부여는 인사명령 등으로 공식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 03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  
취급자의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 필요



조직 내의 임직원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 이동을 통해  
사용자 계정의 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사용자 계정 관리절차에 따라 통제

- 임직원의 퇴직 시 계정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접근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퇴직 점검 시에 사용계정의 말소  
항목을 반영하여 계정의 말소 여부에 대해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등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 인사DB(data base)와 시스템을 연동하여  
인사 DB 삭제 시 시스템의 계정도 동시에 삭제되는 기법 활용 가능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해당 인력의 퇴사 시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에  
반영하여 이행 필요



## 03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 접근권한에 대한 기록의 보관

- 1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5년간 보관
- 2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취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인사명령 등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고 인사명령 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 징구



## 03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 제한 예시(1/4)

관리자 메뉴 ▾

번호	1Depth	2Depth	3Depth	관리
22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사용
21	관리자	점검/팝업공지 관리		<input type="checkbox"/> 사용
20	관리자	권한/메뉴		<input type="checkbox"/> 사용
19	관리자	권한/메뉴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사용
18	관리자	권한/메뉴	코드관리	<input type="checkbox"/> 사용
17	관리자	권한/메뉴	메뉴관리	<input type="checkbox"/> 사용
16	관리자	통계		<input type="checkbox"/> 사용
15	관리자	통계	인터넷창구	<input type="checkbox"/> 사용
14	관리자	모바일앱 통합실시간오류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사용
13	관리자	시스템오류발생정보		<input type="checkbox"/> 사용
12	관리자	통계	회원활동	<input type="checkbox"/> 사용

## 03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 제한 예시(2/4)

## 접근권한 내역 기록·보관 항목 예시

\* 출처: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ID

- 접근 권한이 부여·변경·말소된 대상 ID

대상자 식별정보

- 사후에 해당 개인정보취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름, 사번 등)  
※ ID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추적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저장하지 않을 수 있음

접근 권한 정보

- 부여·변경·말소된 접근 권한에 관한 정보(접근 권한명 등)  
※ 조직별, 그룹별, 역할별, 개인정보취급자별 등 권한부여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해당 접근 권한의 상세내용(대상 메뉴/화면 및 입력/조회/변경/삭제/출력/다운로드 등 세부 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유형

-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신청사유

- 접근 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 사유(예: 신규입사, 조직변경, 퇴사 등)

신청자 정보

- 해당 접근 권한의 신청자 ※ 외부자 등에 따라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자 정보를 기록

신청일시

-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신청한 일시(YYYYMMDD HH:MM:SS)

승인자 정보

- 해당 접근 권한 신청에 대한 승인자 ※ 내부적으로 접근 권한 승인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승인자 정보를 기록

승인일시(적용일시)

-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승인한 일시(YYYYMMDD HH:MM:SS)



## 03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 제한 예시(3/4)

접근 권한 내역·보관 기록 예시

\* 출처: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번호	사용자ID	사용자명	권한명	권한ID	유형	일자	작업자	사유	...
...									
51503	cskim	김철수	회원관리자	S0002	부여	20190220 10:22:01	gdhong	담당업무 변경	...
51504	yhkim	김영희	상담관리자	C0005	부여	20181210 09:50:33	gdhong	상담팀 입사	...
51505	yhkim	김영희	상담관리자	C0005	말소	20190420 13:55:20	gdhong	퇴사	...
...									

계정 관리내역 예시

\* 출처: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아이디	이름	부서명	...	계정상태	계정생성 일시	생성자	비활성화 일시	작업자
gdhong	홍길동	IT팀		활성(Y)	20190112 14:30:20	SYSTEM	-	-
cskim	김철수	IT팀		활성(Y)	20190220 10:22:01	gdhong	-	-
yhkim	김영희	고객팀		비활성(N)	20190228 17:33:50	gdhong	20190420 13:55:20	gdhong
...								

## 03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권한 제한 예시(4/4)

## 접근 권한 규칙 설정 예시

\* 출처: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메뉴명		개인정보 처리 여부	권한 그룹																
			최고 관리자					회원 관리자					게시판 관리자					...	
1단계	2단계		조회	쓰기	수정	삭제	다운로드	조회	쓰기	수정	삭제	다운로드	조회	쓰기	수정	삭제	다운로드	...	
회원관리	회원정보 관리	○	✓	✓	✓	✓	✓	✓	✓	✓	✓	-	-	-	-	-	-	-	
	문의/상담 관리	○	✓	✓	✓	✓	✓	✓	✓	✓	✓	-	-	-	-	-	-	-	
	회원 통계	○	✓	✓	✓	✓	✓	✓	✓	✓	✓	-	-	-	-	-	-	-	
게시판 관리	공지사항	-	✓	✓	✓	✓	✓	✓	-	-	-	-	✓	✓	✓	✓	-	-	
	자유게시판	○	✓	✓	✓	✓	✓	✓	✓	-	-	-	✓	✓	✓	✓	-	-	
...	...																		

## 기타 보호조치 고려

- 인사시스템 등 연동(조직변경, 직무변경, 퇴사 시 자동 권한 회수·조정)
- 장기 미접속시 계정 잠금, 동시 접속 제한, 관리자 로그인 알림, 관리자 접속 IP 제한 등



## 04 위치정보 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집체교육, 인터넷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자체적 교육 및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가능



위치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후 증적 보관(참석자 명단, 수료증 등)



교육계획 수립

교육 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프로그램 등 포함)

교육 일정 및 시간

교육 방법 등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사내 구현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및 이행

##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구성(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자동기록보존) + 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법 제2조제4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6개월간 자동기록보존)

수집자	요청서비스	요청자	수집방법	수집요청시간	수집종료시간
A사업자	친구찾기	B사업자	Cell-ID	2020.01.11. 14:20	2020.01.11. 14:20

### 열람·고지 확인자료

취급자	요청자	목적	일시
-	-	-	-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기록 방법(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전체 ▼

검색

① 대상	② 요청서비스	③ 요청자	④ 수집방법	⑤ 수집요청시간	⑥ 수집종료시간
○○○-○○-○○○	A서비스	B사업자	Beacon	2018. 00. 00. 00:00:00	2018. 00. 00. 00:00:00
○○○-○○-○○○	C서비스	D사업자	Beacon	2018. 00. 00. 00:00:00	2018. 00. 00. 00:00:00

- ① 대상**
  - UUID, 기기-ID 등 위치정보 수집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록
- ② 요청서비스**
  - 위치정보를 제공 받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위치기반서비스 식별 정보  
※ 서비스명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서비스 식별 값을 부여해서 기록하는 것도 가능
- ③ 요청자**
  -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식별 정보  
※ 위치정보사업자가 직접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란 표기 가능
- ④ 수집방법**
  -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식별 정보  
• ※ 수집 방법 또는 기술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식별 값을 부여해서 기록하는 것도 가능  
(단, 이 경우 수집방법 식별정보에 대한 부연 설명 필요)
- ⑤ 수집요청시간**   **⑥ 수집종료시간**
  - 대상의 위치정보 수집을 개시 및 종료한 시간(초단위 까지 표기)

※ 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록·보존 되도록 구현 필요

※ 좌표값 등 위치정보 자체는 기록 금지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기록 예시(위치정보사업자)

- ① 대상 • 별도로 부여한 기기 식별 번호
- ② 요청서비스 • 근로자 실시간 관제 서비스
- ③ 요청자 • (주)0000
- ④ 수집방법 • Beacon, GPS
- ⑤ 수집요청시간 • “연:월:일:시:분:초”
- ⑥ 수집종료시간



### 위치정보 수집 사실 확인

연번	① 대상	② 요청서비스	③ 요청자	④ 수집방법	⑤ 수집요청시간	⑥ 수집종료시간
1	0001	근로자 실시간 관제 서비스	(주) 0000	Beacon	2020-03-10 10:57:50	2020-03-10 10:57:50
2	0002	근로자 실시간 관제 서비스	(주) 0000	GPS	2020-03-10 11:10:31	2020-03-10 11:10:31
3	0003	근로자 실시간 관제 서비스	(주) 0000	GPS	2020-03-10 12:14:20	2020-03-10 12:14:20
4	0004	근로자 실시간 관제 서비스	(주) 0000	Beacon	2020-03-10 12:26:47	2020-03-10 12:26:47
5	0005	근로자 실시간 관제 서비스	(주) 0000	GPS	2020-03-10 12:31:09	2020-03-10 12:31:09

##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구성(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자동기록보존)

+

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법 제2조제5호)

###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6개월간 자동기록보존)

대상	취득경로	제공서비스	제공받는자	제공방법	이용일시
B 사용자	A 사업자	버스관제	C 사용자	위치정보 시스템	2019.01.11. 14:20

### 열람·고지 확인자료

취급자	요청자	목적	일시
-	-	-	-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기록 방법(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검색

① 대상	② 취득경로	③ 제공서비스	④ 제공받는자	⑤ 이용일시
ex1@xxx.com	Android	주변 매장 검색 서비스		2017.08.01 21:49:24
ex2@xxx.com	iOS	배달원 위치조회	ex3@xxx.com	2017.08.01 22:37:19

- ① 대상**
  -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UUID 등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록
  - ※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부여한 이용자 식별 값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
- ② 취득경로**
  -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로 정보
  - ※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식별 정보 기록
- ③ 제공서비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명
  - ※ 서비스명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서비스 식별 값을 부여해서 기록하는 것도 가능(단, 이 경우 서비스 식별정보에 대한 부연 설명 필요)
- ④ 제공 받는자**
  -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받는 자
  - ※ 제3자 제공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표기, 하단에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없는 서비스” 기재
- ⑤ 이용 일시**
  -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시간으로(초단위 까지 표기)

※ 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록·보존 되도록 구현 필요

※ 좌표값 등 위치정보 자체는 기록 금지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기록 예시(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다운로드](#)
[라이브러리](#)

식별값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제공서비스	제공받는자
1135126585	Android	2021. 03. 19 17:11:04	안전관리시스템	alexsong
1218115487	Android	2021. 03. 19 17:10:58	안전관리시스템	alexsong
A1:79:DO:AE:21:FF	ADT Caps	2021. 03. 19 17:10:42	안전관리시스템	alexsong
1587674854	iOS	2021. 03. 19 17:10:29	안전관리시스템	alexsong

#### 식별값

- 이용자 식별값(비콘의 MAC address(A1:79:DD:AE:21:FF), 이용자 ID)

#### 취득경로

- Android, IOS, ADT 캡스

#### 이용제공일시

- “연:월:일:시:분:초”

#### 제공서비스

- 안전관리시스템

#### 제공받는 자

- 현장 관리자 (ID로 식별: alexsong)



## 05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확인자료는 위치정보시스템에 6개월 이상 자동으로 기록·보존되어야 함 (법 제16조제2항)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위치정보 취급대장에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한을 관리하여야 함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자동 기록·보관된 자료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취급대장의 내용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야 함

## 06 정기적인 자체 검사 실시



최소 연 1회 이상



위치정보취급자의 위치정보 보호의무 이행여부



위치정보 취급 관리·지침 현행화



위치정보 관리·운영 상의 문제점, 위치정보취급자의 위반사실 발견 시 개선조치

## 07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인증 실시

##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시 식별 및 인증(1/3)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정당한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인증 조치 필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위치정보취급자별로 발급하고,  
다른 위치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

위치정보취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말기 주소 등의  
식별과 인증을 실시

## 07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인증 실시

##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시 식별 및 인증(2/3)



### 내부에서 접속



### 외부에서 접속

아이디/패스워드, 공인 인증서, 1회용 패스워드 등

비밀번호 유효기간 설정, 동일 또는 유사 비밀번호 재이용 제한,  
최저 비밀번호 문자수의 설정 및 제한,  
일정횟수 로그인 실패 시 아이디 정지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 (2 factor 이상)

PKI 인증서, 보안토큰, OTP, 생체인식 등  
ID/PW 이외에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

##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시 식별 및 인증(3/3)



### … 패스워드 작성 규칙 …

최소 8자 이상으로 구성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 3가지 이상 조합 사용

연속된 숫자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음

위치정보취급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정보 등 사용 제한

최소 6개월 단위로 패스워드 갱신

일방향 암호화 저장 (SHA-256, SHA-384, SHA-512 등)

## 07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인증 실시

## 위치정보 취급 단말기에 대한 식별 및 인증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 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맹점 직원이나 콜센터상담원 등이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

\* 이 경우에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접근 권한자에 대한 식별인증(ID, 패스워드 등)과 단말기에 대한 식별인증(주소 등)을 모두 사용 필요



사용자가 이용하는 단말기를 주소 기반으로 인증하는 경우 방화벽, PKI 인증서, 바이오정보 등 다양한 법이 있고, 사업자의 규모와 업무 특수성에 따라 선택 가능



## 08 방화벽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방화벽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인가되지 않은 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자사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 솔루션 설치·운영

- 침입차단시스템+침입탐지시스템, IPS, Secure OS, 웹방화벽, ACL(Access Control List) 등 적용

※ 국내에서 인증 받은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 웹사이트 ([service1.nis.go.kr](http://service1.nis.go.kr))에서 확인 가능

※ 공개용 SW 참고사이트

-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웹 보안 서비스 → 공개용 웹 방화벽
- 2 침입탐지시스템 Snort 다운로드 웹사이트(<http://www.snort.org>)

-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적용



## 전송구간 암호화



- SSL 인증서 설치 등을 통한 전송구간 암호화

SSL 인증서를 이용한 암호화 절차



- 패킷 점검도구(와이어샤크)를 이용하여 암호화 확인

## 저장 암호화

- 위치정보는 AES-256 이상, ARIA-128 이상, LEA, HIGHT, SEED 등 공인된 기관에서 권고하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암호화 예시

latestLocation

```
8cdd341cc0a54dc6df839
823316814bdd2563620...
308eafeefb366e896e40b1
4e52058bb3081577ee8...
```

- 비밀번호는 SHA-2 이상의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일방향 암호화

위치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 필요

## 10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사실 기록장치 운영(1/2)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서는 접속기록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보관, 단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최소 2년 이상 보관 요구

불법적인 접속 및 비정상적인 행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①식별자,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아이피), ④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⑤수행업무 등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보관, 백업할 때에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에 보관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접속기록 항목 (예시)

\* 출처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 식별자 • A0001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일시 • 2012-06-03. 15:00:00
- 접속지 • 172.168.168.11
- 수행업무 • 홍길동(이용자 식별정보) 연락처 조회 등

## 10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사실 기록장치 운영(2/2)

※ (접속기록 보존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참고

- |             |  |
|-------------|--|
| 계정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
| 접속일시        |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 접속지 정보      | • 접속한 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접속 주소                                    |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이름, ID 등                                       |
| 수행 업무       |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입력, 검색, 열람, 수정,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 예시

- |         |  |
|---------|--|
| 계정      | • A0001(개인정보취급자 계정)                              |
| 접속일시    | • 2019-02-25, 17:00:00                           |
| 접속지 정보  | • 김길동PC 또는 192.168.100.1 (접속한 자의 단말기 정보 또는 IP주소) |
| 정보주체 정보 | • 홍길동 (정보주체를 특정하여 처리한 경우 정보주체의 식별정보)             |
| 수행 업무   | • 회원목록 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 위 정보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환경에 따라 책임 추적성 확보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기록해야 한다.

## 11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 하여야 함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운영체제(OS),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최신의 보안패치 설치



# III

CHAPTER

## 위치정보 점검 준비 관련 주요 내용

01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운영

Q

“

(겸업사업자의 이용약관 운영)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A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 통합 운영 가능

Q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A

「위치정보법」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공개)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

## 02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 위치정보 관리지침 마련

Q

“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사업자 자체적으로 별도  
 마련해야 하는지?”

A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제3호에서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

구분	작성 방법
1. 목적	o 위치정보의 관리지침 수립의 목적을 기재
2. 위치정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o 사업자의 서비스 내용(적용 기술 등)에 맞도록 내용을 기재
3. 위치정보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3.1 조직 구성도	o 위치정보관리책임자, 관리자, 취급자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
3.2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o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임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스 담당 부서의 장
3.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o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기재
3.4 위치정보취급자 및 역할	o 위치정보취급자 및 역할을 기재
3.5 위치정보 권한 제한 등	o 위치정보취급자의 변경사항 내용 기재

구분	작성 방법
4. 위치정보 취급 및 관리	
4.1 위치정보 취급대장 운영 및 관리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등 취급대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	○ 위치정보주체의 이용·제공사실 열람·고지 요구 및 불만 대응 등에 관한 사항
4.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기록·보존 장치 운영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기록·보존 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
4.4 위치정보의 보유 및 파기	○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절차	
5.1. 위치정보 침해사고 보고 및 신속대응팀 운영	○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신속대응팀 운영에 관한 사항
5.2. 위치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 위치정보 침해사고 대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육	
6.1 목적	○ 위치정보보호 교육의 목적
6.2 교육 내용	○ 위치정보 관련 법령, 절차 준수 등
6.3 교육 일정	○ 연 1회 이상 등 정기적인 직원대상 위치정보보호 교육 실시계획을 기재
7. 정기적인 내부 보안 감사	○ 연 1회 이상 내부 정기 감사 실시
8.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차단, 암호화 등 보호조치

03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 이용약관 명시 항목 관련

Q “이용약관 명시 항목 중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A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유 목적 및 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A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위치정보는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보유 근거 및 기간(6개월 이상 의무)을 약관에 명시

##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

Q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와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정의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 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 제외)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4호)

A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정의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법 제2조5호)

## 04 위치정보 취급대장 운영 관련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구성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자동기록보존) + 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대상	요청서비스	요청자	수집방법	수집요청일시	수집완료일시
자녀	위치관제	서비스 제공자	NFC	2025.01.11. 14:20	2025.01.11. 14:20

### <열람·고지 확인자료>

취급자	요청자	목적	일시
서비스 제공자	자녀	자녀 등하원 확인 서비스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요청	2025.01.15. 15:00

## 04 위치정보 취급대장 운영 관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 취급대장의 구성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자동기록보존) + 위치정보 열람·고지 확인자료
-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대상	취득경로	취급자	제공서비스	제공받는자	이용일시
자녀	Cell-ID	서비스 제공자	자녀 등하원 확인 서비스	서비스 이용자	2025.01.11. 14:20

#### <열람·고지 확인자료>

취급자	요청자	목적	일시
서비스 제공자	자녀	자녀 등하원 확인 서비스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요청	2025.01.15. 15:00

## 05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 침해사고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Q

“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 중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침해사고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

A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1항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제4호에서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명시

## 사고 발생 · 발견 또는 발생 시점



## 06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등

Q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은 어떤 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A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기록·보존장치의 운영”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접속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자동기록·보존되도록 하여 저장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는 조치 필요(해설서 p.89)

Q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후 위치정보는 바로 삭제합니다. 이 경우, 실태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위치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 등)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삭제하더라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면 실태점검표 제출필요, 위치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자동 삭제 파기 소스코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필요

Q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접근 기록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A

위치정보 관련 사업 개시한 시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 접근기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신 뒤, 하단에 추가 설명 필요  
(예: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0000년 00월 00일부터 개시하여, 해당 시점인 0000년 00월 00일 부터 기록된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자료를 제출합니다.)

## 07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 안전한 식별·인증수단 적용

Q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별/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수단을 말하는 건가요?



A

안전한 인증 수단이란 위치정보시스템에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위치정보사업자등 여부를 식별/인증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의 적용을 말함 (안전한 인증수단 예시 : 인증서, 보안토큰, OTP 등)

구분	인증 수단	비고
지식 기반	비밀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및 변경주기 고려</li> <li>• 비밀번호 도용, 무작위 대입 공격 등에 대한 대응 필요</li> <li>• 시스템 설치 시 제품 등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계정 및 비밀번호 사용정지 또는 변경 필요</li> </ul>
소유 기반	인증서(PKI)	•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 필요(안전한 보안매체에 보관 권고)
	OTP (One Time Password)	• OTP토큰, 모바일OTP 등 다양한 방식 존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카드 방식</li> <li>• 물리적 보안토큰 방식 등</li> </ul>
생체 기반	지문, 홍채, 얼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체인식정보의 안전한 관리 필요</li> </ul> ※ 참고 : FIDO(Fast Identity Online)



#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